

스토커-피해자 관계에 따른 사건 판단 차이: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 혜 민

박 지 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스토킹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스토킹-피해자 간 관계(서로 모르는 관계, 전 연인관계, 전 고용관계)에 따라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조사하고, 판단자의 나이 및 성별에 따라 사건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더불어, 그간 대인관계 문제 및 데이트 폭력과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진 내면화된 수치심이 스토킹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 고용관계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크고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책임은 전 고용관계보다 전 연인관계일 때, 전 연인관계일 때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각각 더 적다고 평가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전 고용관계보다는 전 연인관계나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더 적게 나타났다. 더불어, 판단자 나이가 스토킹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 본 연구는 같은 스토킹 사건이라도 스토킹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내면화된 수치심이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책임과 비난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스토킹, 내면화된 수치심, 스토킹-피해자 관계, 피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 교신저자: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Tel: 02-2077-7832, E-mail: jjipark@sookmyung.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2022,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2021년 서울시 노원구에서 한 남성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stalking)하던 끝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9월에는 피의자가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회사 내부망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파악해 신당역에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지속적인 접근 혹은 집착적인 괴롭힘으로 정의되며(김정인, 2008), 상대방이 불쾌감을 경험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Mullen et al., 2000). 이와 같이 스토킹은 원치 않는 접근부터 괴롭힘, 폭력을 유발하는 행동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Lyndon et al., 2012).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될 때 스토킹 코드를 별도로 부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강화되고 있다(박외병, 2018). 경찰이 지정한 스토킹 코드에 지정되는 사건은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제3조 제1항 제4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낯선 사람이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등이다(한민경, 2021).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접근을 시도하며 교제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공포나 불안을 일으키는 문자나 영상 등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이다. 더불어 모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따라오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신고자 안전 확보

를 위해 스토킹 코드를 적용하고 있다(한민경, 2021).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법률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1년 12월 1일까지 112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456건으로, 이는 대략 하루 평균 106건에 달하는 수치이다(강소영, 2022).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불안과 우울 등을 경험하며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재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김정인, 2008; Sheridan et al., 2019). 게다가 스토킹 범죄는 향후 살인이나 심각한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법제도의 조기 개입이 절실한 범죄라 할 수 있다(Rai et al., 2020).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가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스토킹 관련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스토킹을 여전히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동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어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해서 판단하며, 때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무용, 김정인, 2016). 더불어, 이러한 경향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 성차가 보고되기도 하였다(McKeon et al.,

2015). 이처럼 스토킹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의 책임 등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건 요인과 판단자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스토킹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중 국외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된 사건 관련 요인은 스토커(stalker)와 피해자와의 관계이다(Chung & Sheridan, 2021). 이에, 본 연구는 스토커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 따라 스토킹 사건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판단자의 나이와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함께, 판단자의 성격특성에 따라 스토킹 사건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그간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 문제 및 타인에 대한 비난과 관련이 있으며 데이트 폭력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내면화된 수치심(이인숙, 최해림, 2005; Lawrence & Taft, 2013)이 스토킹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스토커-피해자 간 관계와 스토킹 사건 판단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낯선 사람, 지인, 과거 연인이나 부부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Brooks et al., 2021).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밀접한 관계형, 관계추구형, 무관계형으로 분류한 연구에 따르면(송민진, 박현정, 2021), 밀접한 관계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나 과거에 가까웠던 관계로 친구나 가족, 혹은 전 연인이나 부부

등이었던 경우를 말하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스토킹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관계추구형은 유명인 등의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등 인연을 맺기 위해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며, 무관계형은 아무 관계가 없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스토킹하는 것이다(송민진 외, 2021). 이 외에 직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도 존재하는데,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와 같은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 사이, 혹은 전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한다(Sheridan et al., 2019). 직장과 관련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등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Robinson & Abrams, 2004). 직장 관련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나 해고 위협 등 보다 심각한 범죄로 악화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eridan et al., 2019). 직장에서의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비롯된 스토킹은, 피해자의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 내 연락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더 이상 고용-피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Sheridan et al., 2019).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실제로는 낯선 사람보다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가 더 지속적이고 위험한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해자가 전 연인보다는 낯선 사람일 때 스토

킹 사건의 심각성이 더 크며,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경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Chung & Sheridan, 2021). 즉,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보다 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 스토킹하는 경우 스토킹의 빈도가 더 잦고 위협적이며 공격적인 경향이 있으며(Logan, 2020), 특히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연인관계나 지인 관계에서 더 지속적인 스토킹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McEwan et al., 2009), 사람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가까운 관계였을 때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보다 더 허용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하며, 스토킹 행동으로 볼 가능성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et al., 2021).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였을 때, 서로 모르는 사이나 지인 관계였을 때보다 사건을 스토킹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낮았으며, 스토킹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Chung & Sheridan, 2021). 더불어,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 간에 스토킹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 비해 해당 상황을 스토킹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 적게 나타났고, 경찰의 개입이나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2016).

이처럼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보다 서로 아는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낮게 판단하는 경향은 스토킹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판단에서도 보고되고 있다(이미정, 변화순, 김은정, 2009).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성범죄에 대한 편견은 성범죄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며,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 모르는 관계나 지인 간 발생한 성범죄보다 범죄라고 판단하는 정도가 낮았고, 사건의 심각성과 가

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낮게 판단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높게 하였다(이정원, 김혜숙,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 등에 비해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스토킹-피해자 간 관계에 따라 사건의 심각성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책임 등 사건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외에도,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 등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자의 특성이나 태도,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판단자의 성별로, 성범죄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자에게 더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더 적게 하였다(윤병해, 고재홍, 2006). 스토킹 범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시나리오 상황을 스토킹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찰 신고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김은영, 2016). 한편 판단자의 나이와 관련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가해자의 폭력성을 낮게 평가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서 더 관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5),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친밀한 관계일 때 판단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하는 등(김은영, 2016)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판단자의 성차별적인 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범죄가 발생했을 것이라 비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등

성차별적 태도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2005).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도, 성차별적 태도가 강할수록 데이트 폭력에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지영, 김성봉, 2021).

더불어 범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된 바 있다. 권위주의는 권력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려 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자신이 권력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성향이다(김재신, 한성열, 2004). 범죄에 대한 판단 관련,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할수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Spaccatini et al., 2019).

권위주의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사회지배경향성 역시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지배경향성은 권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견고하게 만들며,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여겨진다(Altemeyer, 2004).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경찰관은 가해자가 소수집단의 일원일 때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더 강력한 처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Sidanius et al., 1994). 이처럼 높은 사회지배경향성은 타인이나 객관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준, 유태용, 2018). 범죄 사건 판단에 있어서도,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를 더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Canto et al., 2020).

이처럼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차별

주의나 권위주의, 사회지배경향성 등의 태도와 함께, 최근에는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집착이나 분노 표출 등 이성 관계 및 전반적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선미진, 서수균, 2021).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으면 타인에 대한 공감이 낮고 부정적인 평가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과 타인에게 적대감을 유발할 수 있다(이지연, 2008).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은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강할수록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roeve & Howells,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스톡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의와 특징

수치심에는 상태수치심과 특질수치심이 있는데, 상태수치심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정서적 반응인 반면, 특질수치심은 만성적으로 개인의 성격에 내면화된 것으로 전반적인 자아의 경험을 의미한다(김현주, 이정운, 2011). 이처럼 내면화된 수치심은 단순히 구체적 상황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 자신이 사라졌으면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공허감을 포함하며(이인숙 외, 2005) 자신을 부적절하고 무력하게 인식하는 감정이다(Kaufman, 1989). 내면화된 수치심은 비교적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성격특성으로, 다른 성격특성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거나 변화되기 어렵다(안현진, 금명자, 2018).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전반적으로 자신에게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자아 정체감으로 내면화되기 때문에(서영숙, 김진숙, 2007),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내면에서 만성적인 굴욕감과 모욕감을 경험한다(Wells & Jones, 2000). 또한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인관계에 과도한 집착을 하는 동시에,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윤혜영, 강지현, 2015). 수치심이 내면화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적절한 신념이 형성되어, 자신을 향해 있던 적대감이 다른 사람을 향해 표출될 수 있다(김현주 외, 2011).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와도 관련이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으면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임혜령, 이영순, 2017).

내면화된 수치심에는 성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게 나타났고(김현주, 홍혜영, 2013), 국외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점수가 높게 보고된 바 있다(Cunha et al., 2021).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인관계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Nyström et al., 2018).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과 연령 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는 드물지만,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내재화된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낮은 불안이나 우울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좌현숙, 2010). 또한, 20대 여성이 30대 여성보다 수치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전정혜, 유태순, 2014),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치심이 낮은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타인에 대한 이해나 공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Kaufman, 1989), 다양

한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유발하며(이인숙 외, 2005),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Lawrence & Taft, 2013).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수치심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 공격성을 표출하기도 하므로,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정도 높은 상관이 있다(Hundt & Holohan, 2012).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며, 자신에게 수치심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이지연, 2008), 데이트 폭력 중 심리적 폭력정도 연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Harper et al., 2005).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거절이나 이별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수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서적 공감이 저해되어 상대가 원치 않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기도 한다(Dennison & Stewart, 2006). 내면화된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인숙 외, 2005),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인정을 못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자신을 향해 있던 적대감이 상대방에게 향하며 타인에게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다(임혜령 외, 2017). 이처럼 내면화된 수치심은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고, 대인관계 문제나 데이트 폭력 등 공격성 정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 간 폭력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고, 특히 스토킹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건 판

단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스토크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스토크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전 연인관계일 때 스토크가 더 지속적이고 위협성이 높았으나(Chan & Sheridan, 2021; McEwan et al., 2012), 사람들은 스토크와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스토크이라 볼 가능성이 작아지는 등(Becker et al., 2021) 관계에 따른 사람들의 사건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직장 관련 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크는 보다 심각한 범죄로 악화될 위험이 매우 크고, 해고를 통보받은 이후 더 이상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Sheridan et al., 2019), 직장 관련 스토크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을 연구하고 다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크 사건 판단과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토크와 피해자의 관계를 서로 모르는 관계, 전 연인관계, 전 고용관계로 나누어 각각 사건 심각성 판단과 가해자 책임 및 처벌 판단, 피해자 책임 및 비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판단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사건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판단자의 특성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과거 여성이 남성보다 스토크 범죄의 위협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스토크를 형사법적 처벌이 더 필요한 범죄라고 인식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김은영, 2016). 따라서 판단자가 남성보다 여성일 때, 그리고 판단자 나이가 많을수록 사건 심각성

과 가해자 책임 및 처벌 판단이 높게 나타나며, 피해자 책임 및 비난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데이트 폭력 등 대인관계 문제와의 연관성이 높으며 타인 비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내면화된 수치심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성차가 보고된 바 있고(김현주 외, 2013; Cunha et al., 2021), 연령이 높을수록 수치심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전정혜 외, 2014), 판단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의 특성이 피해자 비난 등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설문 업체를 통하여 리워드가 지급되었다. 총 240명 가운데 남성이 120명(50.0%), 여성이 120명(50.0%)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20세에서 59세 사이에 분포하였고, 나이대별로 60명씩 균등하게 분포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39.81세($SD = 10.397$)였다.

연구절차

각각의 연구 참여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스토킹 사건 시나리오는 스토키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 전 연인관계, 전 고용관계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고, 스토키-피해자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3개의 유형 중 하나의 시나리오에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손님으로 물건을 사러 갔다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피해자를 보았다(서로 모르는 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가량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전 연인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약 6개월 가량 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전 고용관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며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서성이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찾아올까 두렵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현하였다.

측정도구

스토킹 사건 판단

시나리오를 읽은 후 연구 참여자들은 해당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

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 피해자에 대한 비난 관련 질문에 각각 응답하였다. 먼저 이 사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1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7점)까지 7점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사건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1점)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7점)까지 7점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처벌 받지 않는다’(1점)에서 ‘최대한 무거운 처벌’(7점)까지, 피해자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측정을 위해 Cook(1988)의 ISS(Internalized Shame Scale)를 이인숙 외(2005)가 번역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런 경우가 없다’(1점)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인숙 외(2005)에서 보고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3이며, 본 연구에서 24개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는 .97이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는 SPSS 26.0과 PROCESS MACRO 4.1을 활용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주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상관분석으로 조사하였다. 스톡 사건 판단의 성차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알아보고, 스톡과 피해자 간의 관계(서로 모르는 관계, 전 연인관계, 전 고용관계)에 따라 사건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판단자의 특성이 스톡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RCO model 4를 활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저 판단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판단자

나이, 스톡 사건 심각성, 가해자 책임, 가해자 처벌, 피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내면화된 수치심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 참조). 분석 결과, 판단자 나이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었으며($r = -.234, p < .001$), 나머지 모든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보이지 않았다. 즉, 판단자 나이가 많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건 심각성은 가해자 책임($r = .517, p < .001$), 가해자 처벌($r = .689,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피해자 책임($r = -.401, p < .001$), 피해자 비난($r = -.365, p < .001$)과는 부적 관계가 있었다. 즉, 사건 심각성을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크고 가해자의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사건 심각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피해자의 책임은 적게 보았으며 피해자를 덜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가해자 책임은 가해자 처벌($r = .539, p < .001$)과 유의한 정적 관계, 피해자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5	6	7
1. 나이	1						
2. 사건 심각성	.026	1					
3. 가해자 책임	.065	.517***	1				
4. 가해자 처벌	.018	.689***	.539***	1			
5. 피해자 책임	.037	-.401***	-.279***	-.327***	1		
6. 피해자 비난	.019	-.365***	-.317***	-.270***	.897***	1	
7. 내면화된 수치심	-.234***	-.071	-.018	.033	.163*	.184**	1
평균	39.81	5.60	5.53	5.05	2.75	2.32	2.28
표준편차	10.397	1.234	1.460	1.409	1.671	1.598	.827

* $p < .05$, ** $p < .01$, *** $p < .001$

책임($r = -.279, p < .001$), 피해자 비난($r = -.317,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평가할수록 가해자의 처벌이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의 책임과 피해자 비난은 적게 평가하였다.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 책임($r = -.327, p < .001$), 피해자 비난($r = -.270, p < .001$)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가해자의 처벌이 엄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피해자의 책임과 피해자 비난은 적게 평가하였다.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은 피해자 책임($r = .163, p < .05$) 및 피해자 비난($r = .184, p < .01$)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판단자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스토킹 사건 판단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스토킹 사건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분석 결과,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사건 심각성에 있어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여성($M = 5.83, SD = 1.150$)이 남성($M = 5.37, SD = 1.276$)보다 스토킹 범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38) = -2.923, \text{Cohen's } d = 0.379, p < .01$). 한편,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가해자 책임 및 처벌, 피해자 책임과 비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내면화된 수치심의 성차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스토킹-피해자 관계에 따른 스토킹 사건 판단

스토킹과 피해자 간 관계에 따라 스토킹 사

표 2. 성별에 따른 스토킹 사건 판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M (SD)	t	df
사건 심각성	남성	5.37 (1.276)	-2.923**	238
	여성	5.83 (1.150)		
가해자 책임	남성	5.53 (1.341)	-.088	238
	여성	5.54 (1.577)		
가해자 처벌	남성	4.88 (1.406)	-1.888	238
	여성	5.22 (1.397)		
피해자 책임	남성	2.88 (1.651)	1.276	238
	여성	2.61 (1.687)		
피해자 비난	남성	2.49 (1.645)	1.662	238
	여성	2.15 (1.537)		
내면화된 수치심	남성	2.31 (.797)	.507	238
	여성	2.26 (.857)		

** $p < .01$

표 3. 스톡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스톡킹 사건 판단

유형	전 고용관계		전 연인관계		서로 모르는 관계	
	N	M(SD)	N	M(SD)	N	M(SD)
사건 심각성	80	5.41(1.166)	80	5.54(1.432)	80	5.84(1.049)
가해자 책임	80	5.20(1.391)	80	5.45(1.550)	80	5.95(1.349)
가해자 처벌	80	4.80(1.436)	80	4.90(1.580)	80	5.44(1.101)
피해자 책임	80	3.49(1.757)	80	2.73(1.534)	80	2.03(1.387)
피해자 비난	80	2.90(1.740)	80	2.19(1.450)	80	1.88(1.426)

건 판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4 참조). 그 결과, 스톡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라 가해자 책임($F(2, 237) = 5.685$, Partial $\eta^2 = .046$, $p < .01$), 가해자 처벌($F(2, 237) = 4.891$, Partial $\eta^2 = .040$, $p < .01$), 피해자 책임 ($F(2, 237) = 17.434$, Partial $\eta^2 = .128$, $p < .001$), 피해자 비난($F(2, 237) = 9.243$, Partial $\eta^2 = .072$,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사건 심각성에 대한 판단은 스톡커

표 4. 스톡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스톡킹 사건 판단 차이 검증

유형	제공합	df	평균제공	F	Partial η^2	Scheffe 검증결과	
사건 심각성	집단 간	7.633	2	3.817	2.540	.021	
	집단 내	356.162	237	1.503			
	합계	363.796	239				
가해자 책임	집단 간	23.333	2	11.667	5.685**	.046	전 고용관계 < 서로 모르는 관계
	집단 내	486.400	237	2.052			
	합계	509.733	239				
가해자 처벌	집단 간	18.808	2	9.404	4.891**	.040	전 고용관계 < 서로 모르는 관계
	집단 내	455.688	237	1.923			
	합계	474.496	239				
피해자 책임	집단 간	85.608	2	42.804	17.434***	.128	서로 모르는 관계 < 전 연인관계 < 전 고용관계
	집단 내	581.887	237	2.455			
	합계	667.496	239				
피해자 비난	집단 간	44.158	2	22.079	9.243***	.072	서로 모르는 관계, 전 연인관계 < 전 고용관계
	집단 내	566.138	237	2.389			
	합계	610.296	239				

** $p < .01$, *** $p < .001$

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가 유의했던 변수에 대해서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우선 가해자의 책임 및 처벌에 대한 판단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 고용관계일 때와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즉,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 고용관계일 때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크고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 고용관계일 때와 전 연인관계,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즉,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보다 전 연인관계일 때, 전 고용관계일 때 각각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평가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 판단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 고용관계일 때와 전 연인관계,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즉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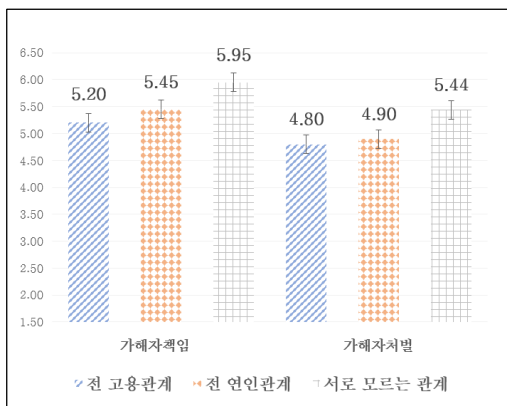


그림 1. 스토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스토킹 가해자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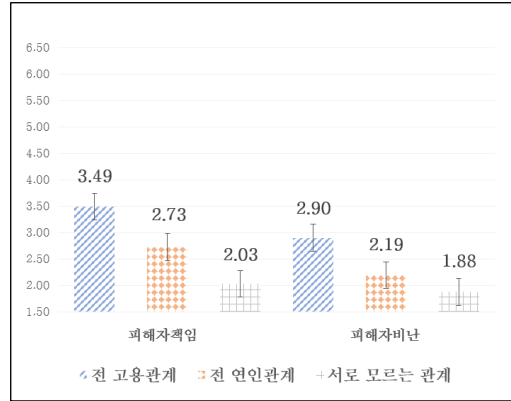


그림 2. 스토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판단

연인관계일 때보다 전 고용관계일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

판단자 나이가 피해자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판단자의 특성이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때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내면화된 수치심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매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판단자의 나이가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만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건 심각성과 가해자의 책임 및 처벌에 대한 판단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 분석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었던 피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먼저 판단자 나이가 피해자 책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

표 5. 판단자 나이와 피해자 책임 판단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판단자 나이 → 피해자 책임	.0059	.0104	-.0146	.0264
직접효과				
판단자 나이 → 피해자 책임	.0127	.0106	-.0081	.0335
간접효과				
판단자 나이 → 내면화된 수치심 → 피해자 책임	-.0068	.0034	-.0143	-.0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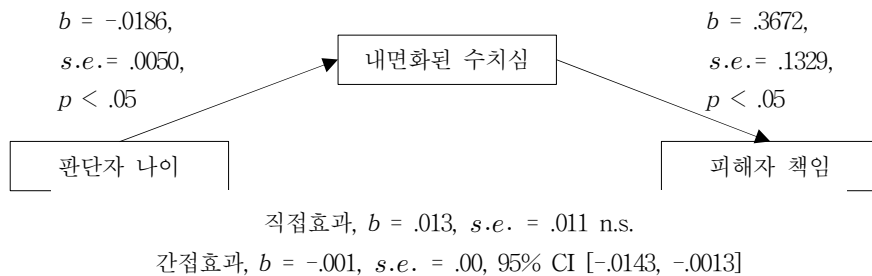


그림 3. 판단자 나이와 피해자 책임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하기 위해 Hayes(2017)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판단자 나이와 피해자 책임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표 5, 그림 3 참조). 즉 판단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고($b = -.0186, s.e. = .0050, p < .05$),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피해자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672, s.e. = .1329, p < .05$).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투입되었을 때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내면화된 수치심의 완전매개효과가 드러났다.

판단자 나이가 피해자 비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이번에는 판단자 나이가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판단자 나이와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표 6, 그림 4 참조). 즉, 판단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고($b = -.0186, s.e. = .0050, p < .05$),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피해자를 더 강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849, s.e. = .1267, p < .05$).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투입되었을 때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완전매개효과가 드러났다.

표 6. 판단자 나이와 피해자 비난 판단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판단자 나이 → 피해자 비난	.0029	.0100	-.0167	.0226
직접효과				
판단자 나이 → 피해자 비난	.0101	.0101	-.0098	.0299
간접효과				
판단자 나이 → 내면화된 수치심 → 피해자 비난	-.0072	.0032	-.0143	-.0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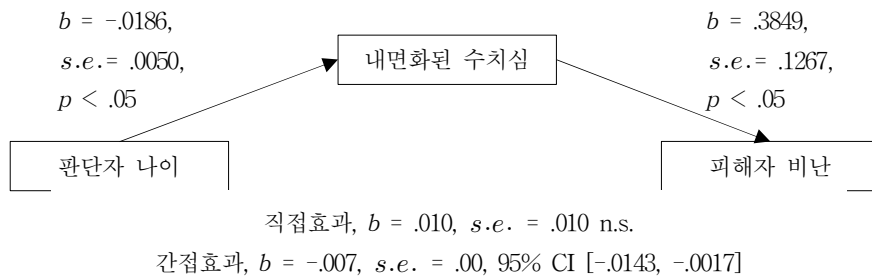


그림 4. 판단자 나이와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논 의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동 정도로 간주되는 등 스톱킹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는 현 시점에(조무용 외, 2016), 본 연구는 스톱킹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선 스톱킹 사건 판단에 있어 성차가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스톱킹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스톱킹 사건의 심각성 판단에 있어 성차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조무용 외, 2016; McKeon et al., 2015), 앞으로 이러한 스톱킹 사건 인식에서의 성차

를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스톱킹 사건의 심각성 판단 외에 가해자의 책임이나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책임 및 피해자 비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스톱킹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고 책임을 더 묻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배치되는 결과이다(조무용 외, 2016). 단, 성차가 나타난 선행연구의 경우 스톱킹 피해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명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에서 피해자의 성별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스톱킹 사건 판단에 관한 연구에서 피해자의 성별을 달리하여 이러한 경향이 다시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스토크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건 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사건 심각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스토크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라 가해자 책임 및 처벌, 피해자 책임과 비난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가-피해자가 전 고용관계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가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스토크가 서로 모르는 관계보다 아는 관계였던 사람 간에 발생하였을 때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더 낮게 인식한 국내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김은영, 2016). 이러한 결과는 서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크 사건의 경우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크보다 피고인의 책임이 더 적게 인식되고, 피고인에 대한 보다 관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요하는 결과이다.

한편, 피해자 책임 판단에 있어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보다 전 연인관계일 때, 전 연인관계일 때보다 전 고용관계일 때 각각 피해자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과거 연인관계였을 때 스토크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한 국외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hung & Sheridan, 2021). 더불어, 피해자 비난에 있어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와 전 연인관계일 때보다 전 고용관계일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관계보다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 판단 시 가해자의 처벌 정도는 낮게,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높게 하는 등의 경향이 스토크 범죄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미정 외, 2009; 이

정원 외, 2012). 특히 스토크와 피해자의 관계가 전 고용관계일 때 가해자의 책임과 처벌은 적게,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비난은 높게 판단한 본 연구 결과는 제시된 시나리오 속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상황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즉, 피고인이 해고 통지를 받은 점이 스토크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 참작 사유로 작용하여, 피고인보다 관대하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책임을 더 물으며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피해자 책임 및 비난에 대한 판단이 스토크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종사자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해 선불리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시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이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Chung & Sheridan, 2021)와는 달리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해자-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스토크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서로 모르는 관계, 전 연인관계, 전 고용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스토크 사건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이외에도 이웃 등의 지인, 과거의 부부 관계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직장과 관련된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 상사와 부하 직원 등 다양한 관계를 포함한다(Brooks et al.,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토크와 피해자의 관계를 낯선 사람, 동료, 전 연인관계로 설정하였을 때 관계가 가까울수록 스토크를 범죄로 볼 가능성이 낮고 심각성을 적게 판단하였다(Becker et al., 2021). 더불어 전 부부관계에

서 스토킹이 발생하였을 때 알고 지내던 관계나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스토킹이 발생하였을 때보다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2016). 따라서, 앞으로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인 전 부부 관계나 직장 동료 간에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에서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직장 관련 관계로 전 고용관계에서의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았으나, 이처럼 해고 통지를 하는 상하 관계가 아닌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이나 피해자의 책임 및 비난 판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 등 범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관련하여, 과거 성차별주의나 권위주의, 사회지배경향성 등 여러 요인이 연구된 바 있다(강지영 외, 2021; 김혜숙 외, 2005; Canto et al., 2020; Spaccatini et al., 2019). 본 연구는 타인에 대한 낮은 공감과 부정적 평가, 타인 비난 경향성과 관련이 있는 내면화된 수치심(이지연, 2008)이 스토킹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스토킹 범죄 발생에 있어 피해자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 판단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비난 판단과만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범죄 피해자 비난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Proeve & Howells, 2002)와 일맥상통한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여겨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은(서영숙 외, 2007), 스토킹 사건에

서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 사건 발생을 촉발하였다는 내부 귀인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높은 책임과 비난 판단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더불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이 낮다는 점은(Kaufman, 1989),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낮은 공감으로도 이어져 높은 비난의 결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스토킹 범죄 사건 판단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현 시점에서, 스토킹 피해자 책임 및 비난 판단에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 성차를 보고한 과거 연구들(김현주 외, 2013; Cunha et al., 2021)과는 달리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에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를 재검증하고, 판단자의 성별이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재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과 연령 간 관계를 보고한 연구는 드물지만, 청소년이 성장할수록 내재화된 문제가 감소하며(좌현숙, 2010), 20대 여성보다 30대 여성의 수치심이 더 낮게 나타나는 등(전정혜 외, 2014) 나이가 증가할수록 수치심이 감소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 판단자 나이와 스토킹 피해자 판단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피해자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며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판단자의 나이와 스토킹 사건 피해자에 대한 판단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오로지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피해자의 책임 및 비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나이와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스토크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거 대인관계 문제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등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이인숙 외, 2005; Harper et al., 2005), 사건의 심각성이나 가해자 처벌 등 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앞으로는 스토크 범죄 뿐만 아니라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나 가해자 처벌 판단, 피해자 책임 판단 등에 있어서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스토크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 이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적,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일 때 스토크 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더 묻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경찰이나 조사관, 판사 등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반영되어, 혹시라도 스토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소영 (2022). 판결문 분석을 통한 스토크범죄의 특성과 진단 -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괴롭힘 판례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 55-84.

강지영, 김성봉 (2021).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 23(1), 79-103.

김은영 (2016). 스토크행위에 대한 인식과 경찰개입의 필요성 판단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3), 93-112.

김재신, 한성열 (2004).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97-114.

김정인 (2008). 스토크와 그 가해자에 관한 소고-유형과 심리-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19, 159-194.

김현주, 이정윤 (2011).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 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3), 965-981.

김현주, 홍혜영 (2013). 고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181-209.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2005).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117-133.

박외병 (2018). 경찰의 데이트 폭력 대응 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4(3), 61-76.

서영숙, 김진숙 (2007). 사회적 행동의 구조 분석(SASB) 모형을 통해서 본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이미지 및 대인패턴. 상담학연구, 8(3), 859-875.

선미진, 서수균 (2021).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

- 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중독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9(1), 1-20.
- 송민진, 박현정 (2021). 스토킹의 현주소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9(2), 141-170.
- 안현진, 금명자 (2018).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1), 173-187.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윤혜영, 강지현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05-423.
- 이미정, 변화순, 김은정 (2009).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20), 1-248.
-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5).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1), 65-81.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정원, 김혜숙 (2012). 강간사건 판단에 주변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 부부강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47-73.
- 이지연 (2008).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9(2), 353-373.
- 이현준, 유태용 (2018). 사회지배지향성과 맥락 수행 간 관계: 웅대성과 지배성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1(4), 795-829.
- 임혜령, 이영순 (2017).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59-178.
- 전정혜, 유태순 (2014). 미혼여성의 공격 자기 의식과 신체관리행동의 관계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 -. *한국디자인포럼*, 45, 137-146.
- 조무용, 김정인 (2016).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통념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109-134.
- 좌현숙 (2010). 청소년 내재화 문제의 발달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발달-맥락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7(10), 105-133.
- 한민경 (2021).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112 신고자료 분석. *형사정책*, 33(1), 39-65.
- Altemeyer, B. (2004). Highly Dominating, Highly Authoritarian Personaliti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4(4), 421-448.
- Becker, A., Ford, J. V., & Valshtein, T. J. (2021). Confusing Stalking for Romance: Examining the Labeling and Acceptability of Men's (Cyber)Stalking of Women. *Sex Roles*, 85, 73-87.
- Brooks, N., Petherick, W., Kannan, A., Stapleton, P., & Davidson, S. (2021). Understanding female-perpetrated stalking. *Journal of Threat*

- Assessment and Management*, 8(3), 65-76.
- Canto, J. M., San Martín, J., Perles, F., & Vallejo, M. (2020). Persons who fear freedom and equality are the ones who most blame women who are victims of acquaintance rape. *Violence against women*, 27(6-7), 731-747.
- Chan, H. C. O., & Sheridan, L. P. (2021). Stalking Perpetration in Hong Kong: Exploring the Stalker-Victim Relationship. *Victims & Offenders*, 17(7), 1055-1073.
- Chung, K. L., & Sheridan, L. (2021). Perceptions of stalking in Malaysia and England: The influence of perpetrator-target prior relationship and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2, 1-7.
- Cook, D. R. (1988).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2), 197-215.
- Cunha, M., Silva, P., Ferreira, C., & Galhardo, A. (2021). Measuring Shame in Adolescents: Validation Studies of the External and Internal Shame Scale in a Community Sample. *Child & Youth Care Forum*, 50(6), 971-989.
- Dennison, S. M., & Stewart, A. (2006). Facing Rejection: New Relationships, Broken Relationships, Shame, and Stal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0(3), 324-337.
- Harper, F. W. K., Austin, A. G., Cercone, J. J., & Arias, I. (2005). The Role of Shame, Anger, and Affect Regulation in Men's Perpetration of Psychological Abus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2), 1648-1662.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undt, N. E., & Holohan, D. R. (2012). The role of shame in distinguishing perpetra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U.S. veteran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5(2), 191-197.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1st ed.).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awrence, A. E., & Taft, C. T. (2013). Sham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2), 191-194.
- Logan, T. K. (2020). Examining Stalking Experiences and Outcomes for Men and Women Stalked by (Ex)partners and Non-partners. *Journal of Family Violence*, 35(7), 729-739.
- Lyndon, A. E., Sinclair, H. C., MacArthur, J., Fay, B., Ratajack, E., & Collier, K. E. (2012). An Introduction to Issues of Gender in Stalking Research. *Sex Roles*, 66, 299-310.
- McEwan, T. E., MacKenzie, R. D., Mullen, P. E., & James, D. V. (2012). Approach and escalation in stalking.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3(3), 392-409.
- McEwan, T. E., Mullen, P. E., & MacKenzie, R. (2009). A study of the predictors of persistence in stalking situations. *Law And Human Behavior*, 33(2), 149-158.
- McKeon, B., McEwan, T. E., & Luebbers, S. (2015). "It's Not Really Stalking If You Know the Person": Measuring Community Attitudes That Normalize, Justify and Minimise Stalking. *Psychiatry, Psychology and*

- Law*, 22(2), 291-306.
- Mullen, P. E., Pathé, M., & Purcell, R. (2000). *Stalkers and their Victims* (1s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yström, M. B. T., Kjellberg, E., Heimdahl, U., & Jonsson, B. (2018). Shame and interpersonal sensitivity: Gender difference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nalized shame coping strategies and interpersonal sensitivity.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82(2), 137-155.
- Proeve, M., & Howells, K. (2002). Shame and Guilt in Child Sexual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6), 657-667.
- Rai, A., Villarreal-Otálora, T., Blackburn, J., & Choi, Y. J. (2020). Correlates of Intimate Partner Stalking Precipitated Homicid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35(5), 705-716.
- Robinson, G. E. & Abrams, K. M. (2004). Stalking in the Workplace. *Directions in Psychiatry*, 24(8), 89-96.
- Sheridan, L., North, A. C., & Scott, A. J. (2019). Stalking in the workplace. *Journal of Threat Assessment and Management*, 6(2), 61-75.
- Sidanius, J., Liu, J. H., Shaw, J. S., & Pratto,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Hierarchy Attenuators and Hierarchy Enhancers: Social Dominance Theor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4), 338-366.
- Spaccatini, F., Pacilli, M. G., Giovannelli, I., Roccato, M., & Penone, G. (2019). Sexualized victims of stranger harassment and victim blaming: The moderating role of right-wing authoritarianism. *Sexuality & Culture*, 23(3), 811-825.
-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 1 차원고접수 : 2022. 10. 03.
심사통과접수 : 2022. 11. 22.
최종원고접수 : 2022. 11. 24.

**Difference in the judgment of stalking
by stalker-victim relationships:
The mediation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Hyemin Cho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 stalking rises as a serious public matter, we aim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judgment of stalking. We investigated if there was any difference in the judgment of stalking by stalker-victim relationships(i.e., strangers, ex-partners, and ex-colleagues), and by people's gender and age. We also explored if internalized shame, known to be related to interpersonal problems and dating violence, affected the judgment of stalking. As a result, the offender responsibility was evaluated higher in the stalking occurred between strangers than ex-colleagues, and more severe punishment was evaluated for the stalking occurred between strangers than ex-colleagues. The victim was held less responsible for the stalking occurred between ex-partners than ex-colleagues, and for the stalking occurred between strangers than ex-partners, and the victim blame was evaluated less for the stalking occurred between strangers and ex-partners than ex-colleagues. The mediation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on the relation between age and stalking judgment was significant. The less the people's age, the higher the internalized shame, and the more likely to hold the victim responsible and to blame the victim for the stalk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judgment of stalking differed by stalker-victim relationships. Additionally, the mediation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between age and judgment of victim responsibility and victim blame was significant.

Key words : *stalking, internalized shame, stalker-victim relationships, victim responsibility, victim blame*